

설치허가신청서
가축분뇨배출시설
 변경허가신청서
 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 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설치허가 : 7일 변경허가 : 7일 변경신고 : 5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신청인	① 상호(명칭)		② 사업자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)				
	③ 성명(대표자)		④ 생년월일				
	⑤ 주소 (전화번호:)						
신청내용	⑥ 사업장 소재지 (전화번호:)						
	⑦ 착공예정일(착공일)		⑧ 준공예정일(준공일)				
	⑨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						
	배출시설	시설명	가축종류	사육마릿수	규모(㎡)	수량	배출량(㎡/일)
	처리시설	시설명	처리방법	처리공법	용량(㎡/일)	수량	
	⑩ 초지 또는 농경지		소재지	면적(㎡)			
	⑪ 사용 용수량(㎡/일)		⑫ 퇴비저장시설(㎡)				
	⑬ 위탁처리내용	위탁처리 대상		운반 위탁업체			위탁 처리시설
가축종류		종류	위탁량(㎡/일)	업체명	사업자등록번호	허가·신고번호	
⑭ 악취저감방안	악취유발물질		악취방지시설의 설치·운영(악취저감방법)				
			종류			밀폐 여부	
			방법			가동계획	
⑭ 변경내용		변경사유		변경전		변경후	

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, 제5조2항,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설치허가 : 10,000원 변경허가 : 5,000원 변경신고 : 없음
------	-------	---

첨부서류	<p>1. 설치허가신청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나.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다.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 설계도서(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) 1부 라.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(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함) 1부 마.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. 오니(汚泥)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(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함) 1부 사.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·관리계획 각 1부(「악취방지법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함) <p>2.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나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------	--

유의 사항

1.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2.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
 - 가. 배출시설의 규모 또는 가축분뇨의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(허가를 받은 후 증가하는 누계를 말합니다)하는 경우
 - 나.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
 - 다. 가축분뇨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
 - 라.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
 - 마.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의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3.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.
4.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
 - 가.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는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축소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변경되는 경우
 - 나. 처리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
 - 다.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처리공법만을 변경하는 경우
 - 라.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[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(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)하는 경우를 포함함]
 - 마.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
 - 바.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1) 초지 또는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
 - 2)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자가 수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(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합니다)하는 경우
 - 사. 사용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(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더라도 그 사육시설이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함)
 - 아. 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
5.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

작성 방법

1. 첨부서류 작성요령
 - 가.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축사배치도, 축사설계도면을 포함하여 각 축사별 위치, 사육마릿수 등을 적어야 합니다.
 - 나.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에는 예상되는 최대 가축사육 마릿수, 가축의 종류별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산출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.
 - 다.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에는 시설명칭·처리용량·처리효율·설비내용 등을 기재해야 하며, 처리시설의 설계도면·오염물질 등의 처리계통도, 방지사설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자의 등록증 사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 - 라.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에는 축산비료를 뿌릴 모든 농지의 지번(地番)과 면적 등을 적습니다.
 - 마.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에는 세부 기계·시설의 설치위치, 명칭, 용량, 용수량 등과 배출구 위치도 등을 적습니다.
 - 바. 최종오니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에는 발생시설명, 최대 발생량, 처리방법, 처리시설명, 용량, 수량 및 처리량 등을 적습니다.
 - 사.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량에 대한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, 그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양에 따른 사용목적별 사용량을 표시해야 합니다.
2. 신청(신고)서 작성요령
 - 가. ⑨, ⑬의 가축종류는 돼지, 소, 젓소, 말, 닭, 오리, 양, 사슴, 개로 구분합니다.
 - 나. ⑨, ⑬의 처리방법은 퇴비화, 액비화, 정화처리, 바이오에너지화, 기타로 구분합니다.
 - 다. ⑬의 종류는 분, 오, 분뇨, 액비, 기타로 구분합니다.
 - 라. ⑬의 허가·신고번호는 가축분뇨수집운반업 및 가축분뇨처리업, 가축분뇨재활용의 허가·신고번호를 적습니다.

처리 절차

